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 이 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제66조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7조 3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 조건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 최선집행의무[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의무] 관련 주요 용어



최선집행기준

■ 최선집행기준

- 가격, 거래비용, 규모,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SOR(Smart Order Routing)**
 - 각 시장 별 거래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동주문 전송시스템입니다.



통합호가와 주문유형

■ 통합호가

- 한국거래소(이하 “KRX”)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이하 “NXT”)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한 호가입니다.

■ 주문유형

-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이란, 통합호가창내 기존 물량(호가 잔량)을 이용하여 즉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예)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은 기존 물량 체결 주문에 해당 등

-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이란, 통합호가창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입니다.

예) 지정가 주문(Limit Order, 투자자가 대상 증권 가격과 수량 등을 지정하게 되는 주문)중 즉시 체결되지 않은 물량은 신규 물량 조성 주문으로 남게 됩니다.

※ 단, 시장가 또는 지정가 주문 시 기 접수된 호가의 잔량에 따라 한가지 유형이 아닌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과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가 혼합된 유형으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거래 조건 관련 용어

■ 상품의 가격

- 최선의 거래조건 집행을 위한 “상품의 가격”이란, 투자자의 상품 매매를 위한 통합호가창에서의 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 토스증권은 공개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공개호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란, 주문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중 주문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는 명시적 비용을 의미하며 이하 “거래비용”이라 합니다.
- 암묵적 비용이란 사전적으로 요율이 확정된 명시적 거래비용 외의 비용(시장충격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규모

- 개별 주문의 규모이며, 매수주문 수량 또는 매도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 총금액

- 총금액이란 가격, 거래비용, 규모를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매매의 반대급부로 투자자가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또는 투자자가 수취하는 “총대가”입니다.
- 총비용은 매수주문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수금액으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의 총합”, 총대가는 매도주문 시 투자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도금액으로 “매도금액과 거래비용의 차이”입니다.
 - 매수시 총비용 = [(주당 가격 × 매수수량) + 거래비용]
 - 매도시 총대가 = [(주당 가격 × 매도수량) - 거래비용]

※ 총금액 판단 시 고려하는 거래비용은 투자자가 주문시점에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회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실제 납부하게 될 거래비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매체결가능성

- 주문이 집행되어 실제로 매매체결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호가의 잔량 등으로 판단하고 회사별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선집행기준에 관한 의무



최선 주문 집행

- 토스증권은 통합호가의 현재 잔량을 기준으로 상품의 가격,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 규모, 총 금액, 매매체결 가능성 등에 대해 최선주문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맞게 최선 주문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 투자자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지시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시장 별 주문 집행 특징

■ 정규장

시장	거래시간	시장 운영 특징
프리마켓	08:00~0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NXT에서 운영하는 시장• 미체결시 자동으로 시가 생성 후 메인마켓으로 주문 이관
메인마켓	08:30~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KRX의 시가(09:00) 단일가 매매
	09:0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KRX와 NXT 모두 운영• 통합호가를 분석하여 최선주문 집행• NXT로 접수된 주문의 경우 미체결시 애프터마켓으로 주문 이관• 단 09:00~09:00:30 NXT 휴장으로 KRX로 주문 집행
	15:2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KRX의 종가(15:30)단일가 매매
애프터 마켓	15:30~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NXT의 애프터마켓 시가(15:40) 단일가 매매
	15:4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NXT에서 운영하는 시장

■ 시간외장

시장	거래시간	시장 운영 특징
(전일) 종가	08:30~08:40	• KRX에서 운영하는 전일종가로 운영되는 시장
종가	15:30~16:00	• KRX와 NXT에서 모두 운영하는 종가시장 • KRX는 종가수신전 주문접수 불가하며, 15:40이후 접속매매 지원
단일가	16:00~18:00	• KRX에서 운영하는 단일가(10분마다 체결)매매 시장 • 거래대상은 NXT 미지원 종목 한정

☑ 최선집행기준 세부 기준



적용 대상 증권

- 토스증권의 최선집행 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회사의 대상 집행 시장

- 토스증권은 KRX와 NXT를 집행시장으로 합니다.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 최선집행기준의 고려사항

- 상품의 가격
 - 통합호가창의 주당가격을 기준으로 공개된 호가의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 매매체결 가능성

■ 최선집행 기준

-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
 - ① 복수 거래소의 거래조건 중 "총금액(총비용, 총대가)"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소
- 총금액이 같을 경우 KRX로 집행
 - ② "①" 조건으로 주문 후 수량이 남았을 경우 거래량 대비 누적 잔량*을 비교하여 작은 값의 거래소
*누적 잔량 : 원칙적으로 호가참조깊이(10호가)로 하되, 호가참조깊이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문가격까지의 호가를 참조
 - ③ "②" 거래량 없어 판단이 불가하거나 값이 동일한 경우 KRX로 집행
 - ④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면 KRX와 NXT에 주문을 분할하여 집행

-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
 - ① 주문호가의 잔량을 비교하여 호가 잔량이 작은 거래소
 - ② "①" 잔량이 없어 판단이 불가한 경우 거래량 대비 동일방향 누적 잔량을 비교하여 작은 값의 거래소
 - ③ "②" 거래량 없어 판단이 불가한 경우 거래량 대비 상대방방향 누적 잔량을 비교하여 큰 값의 거래소
 - ④ "③" 거래량 없어 판단이 불가하거나 값이 동일한 경우 KRX로 집행
 - ⑤ 원 주문을 지속적으로 정정하는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주문건수가 증가 될 수 있어 주문 집행 시 복수의 거래소로 주문을 분할하지 않음

■ 정정 주문

- 정정주문 또한 주문 집행에 해당되며 정정주문 시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 Order)과 신규 물량 조성 주문 (Make Order)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최선주문집행

■ 집행시장의 성격

- 토스증권은 KRX와 NXT 두개의 거래소가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정규장의 메인마켓(09:00:30~15:20)의 경우 투자자 주문(정정주문 포함)을 집행시마다 최선집행의 기준에 따라 집행
- 그 외 시장 ①~④는 주문가능여부와 접속매매 시간을 반영하여 지정된 거래소로 집행
 - ① 프리마켓(08:00~08:50) : NXT
 - ② 시가/종가 단일가(08:50~09:00/15:20~15:30) : KRX
 - ③ 시간외종가(15:30~16:00) : NXT(단, NXT 미 지원 종목의 경우 KRX)
 - ④ 애프터마켓(16:00~20:00) : NXT

☑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예외



최선집행기준 적용 일반 예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로부터 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 지시 받은 집행 방법
 - 투자자의 거래소 지시
 - 지정한 거래소로 주문집행이 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요청한 경우 지정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투자자 지시 유형	내용
KRX	회사에서 지정한 적용 예외 주문을 제외한 모든 주문이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고 KRX로 발주합니다.
NXT	회사에서 지정한 적용 예외 주문을 제외한 모든 주문이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고 NXT로 발주합니다.

-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및 유의사항
 - 최선주문집행 의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지시 내용에 따라 주문을 처리·집행합니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 경우 결과가 당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결과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 유효기간: 3개월 (단, 유효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 시 변경 전일에 만료처리)
 - 만료예정 통보
 - 만기일 7일 전(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만기일 전 영업일, 만기일
 - 통보매체: 앱/WTS 푸시, 앱 알림, 알림톡
-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집행
 - 당해 계약 등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
- 거래 약관 또는 계약 등에 있어서 집행 방법을 특정하는 거래
 - 당해 집행 방법
- 기타 예외 사항은 <별첨1> 참고
- SOR(Smart Order Routing) 관련 유의사항
 - SOR 주문이 집행되었으나 집행시장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주문이 거부되는 경우 SOR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OR 정정 주문은 전체 미체결 잔량 취소한 후 신규주문으로 집행되며 이때 신규주문의 거부 사유 발생 시 해당 원주문은 취소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주문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집행기준 적용 특별 예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스증권이 정상화로 선언 전까지 최선집행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경우에 해당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다.
 - NXT 장애 발생 시 최선집행을 중단하고 KRX로 집행
 - KRX 장애 발생 시 최선집행을 중단하고 NXT로 집행
 -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장애 발생시 최선집행을 중단하고 KRX로 집행
 -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시 접속매매가 가능한 시장으로 집행하며, KRX와 NXT 모두 VI가 발생하는 경우 KRX로 집행



최선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 미 귀속

- 토스증권의 최선집행 의무는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절차상의 책임으로 회사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시점에 토스증권이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했다면 그 주문의 결과의 책임은 토스증권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최선집행 의무에 관한 사항



최선집행 점검 및 공표

- ① 토스증권은 3개월마다 “ 최선집행 기준 세부기준 >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 ■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합니다.
- ② 토스증권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기준을 공표하거나 ①에 따라 그 변경 사실(변경 이유를 포함한다)을 공표하는 경우 토스증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 토스증권의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는 ‘토스증권 홈페이지 > 약관 및 거래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명서 교부 의무

- ① 토스증권은 국내주식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문서 또는 전자문서(온라인 교부, 앱 알림, 이메일 등)등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교부(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 최선집행 의무에 관한 사항 > 📌 최선집행 점검 및 공표 > ①")에 따라 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이 기재된 설명서를 말함)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③ 설명서 최선집행 기준("☑ 최선집행기준 세부기준 > 📌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 ■ 최선집행기준"을 의미)이 변경된 경우 고객과 합의한 방법(앱/WTS 푸시, 앱 알림,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재교부)되며, 이외의 부분이 변경된 경우는 "☑ 최선집행 의무에 관한 사항 > 📌 최선집행 점검 및 공표 > ②"의 방법으로 공표합니다.



증빙 제공 의무

- 토스증권은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그 기준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 제공 방법
 - 서면, 전화, 알림톡(SMS), 전자우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 제공 정보
 -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 · 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제공 정보
 - 투자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공



기록·유지 의무

- 토스증권은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10년 이상 기록·유지합니다.

<별첨1> **토스증권의** **최선집행** **예외사항**

- "  최선집행 기준의 적용 예외 >  최선집행기준 적용의 예외 > 기타 예외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①~④) 해당하는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적용을 예외로 KRX로 집행하며, 향후 별도의 일정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① 조건주문은 시세를 감시하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문이 실행되는 서비스로 과도한 호가 변동 및 체결 지연 등 발생하는 경우 체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 KRX로 주문 집행하며, 향후 NXT의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종목 그리고 이용자들의 형태를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② ARS주문은 ARS 매체의 복잡도 및 사용자의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KRX로 주문 집행합니다. 향후 NXT의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종목 그리고 이용자들의 형태를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③ 권리매도주문(유·무상 등 권리로 입고된 수량의 매도주문)은 시스템 반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④ 주식모으기는 고객이 선택한 종목과 수량을 일정한 주기로 구매하는 주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수의 종목 일괄구매가 가능합니다. KRX와 NXT의 거래가능한 종목이 상이하여 전 종목이 거래가 가능한 KRX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 다음(①~②) 해당하는 경우 최선집행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합니다.**

 - ① 예약주문을 KRX와 NXT를 비교하여 최선집행을 할 수 있는 메인마켓(09:00:30~)에 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장시작 후 주문이 집행되어 체결가격의 변동폭이 크며, 주문가능 금액 변동 등의 사유로 주문이 실패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과 동일하게 KRX 정규장 시작 전(08:20)로 KRX로 주문이 집행됩니다**
 - ② 반대매매주문은 시가단일가로 주문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KRX로 주문을 집행합니다.**